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17 선고 2023가단1071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최단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원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1. 5. 21.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2,733,216원 및 그 중 1,179,880원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89337호로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8. 1,179,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0. 26.부터 2006. 5. 10.까지 연 2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의 2006. 5. 10. 기준 원리금 합계는 2,733,216원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은 2020. 1. 2.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20. 1. 6.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은 2021. 5. 21.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21. 5. 2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D, C, 피고는 모두 형제지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담보가치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거나 더욱 심화시켰고, 이는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3201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9. 2. 11.부터 포터 II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C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상 위 화물차량의 2023. 2. 9. 기준 가액은 917만 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당연히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 즉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점은 위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C의 모든 적극재산에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의 가액과 모든 소극재산의 가액을 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8959 판결 등 참조),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당시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내역 및 그 가액을 알기 어려워 C이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수진

별지